

광 주 고 등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8나20124 손해배상(기)

원고,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

김○○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

담당변호사 박철

피고,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

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서한기

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. 12. 13. 선고 2016가합12473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7. 6.

판 결 선 고 2018. 8. 10.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15,772,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5. 8.부터 2018. 8. 1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6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29,305,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5. 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.

3. 부대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

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▣ 6쪽 5행 "잠금콘을" 다음에 "미리 점검하여 해제 후 자동으로 잠기는 것을 방지하고"를 추가한다.

3. 다시 쓰는 부분(6쪽 아래에서 9행 이하)

『2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,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,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(다만 월 5/12%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, 계산의 편의상 첫 월 미만은 올리고,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).

가. 재산상 손해

1) 인적 재산상 손해

가) 일실수입

(1)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8, 18 내지 21, 31, 34, 3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기재, 제1심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(가) 생년월일 및 성별 : 1963. 5. 9.생 남자

(나) 기대여명 종료일(2015년 발표된 완전생명표상 51세 남자인 원고의 기대여명 29.9세) : 2045. 3. 24.

(다) 직업, 월소득 : 건설기계 운전기사,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중 건설기계 운전사의 단가 적용

원고의 월소득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15년도 상·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중 건설기계 운전사의 단가를 적용하여 월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(갑 제18호증).

(라)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: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(만 65세)인 2028. 5. 8.까지 월 22일씩

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의 평균여명 이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,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,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개인사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그 사람의 연령, 직업, 경력,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다10135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, 경험칙상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다.

① 사고 당시 원고는 만 51세 남성으로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, 당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78.96세였고,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수는 약 3,756,000명에 이르렀다.

②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와 같은 직종(컨테이너 화물트럭 운전기사)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49.4세였고, 50대 연령 초과 비율은 50.6%에 이르렀으며, 같은 직종에 대해 특별히 정년이 없었다.

③ 사고 이후이기는 하나 2016년과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, 전체 컨테이너 운전

자 중 60세 이상이 14.3%~20.7% 정도에 이르고 있다.

④ 컨테이너 화물트럭 운전기사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노동에 해당하여 특별히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60세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(마)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

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. 5. 8.부터 같은 달 28.까지 전남대학교병원과 운암한국병원에 입원한 사실, ② 원고는 2015. 5. 9.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제11번, 12번 흉추, 제1번, 2번, 3번 요추간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나 요추부 운동장애가 남아 있는 사실, ③ 위와 같은 후유장애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척추손상 I-A-1-c항 32%에 해당하고, 나사못 수술기구를 삽입한 상태에서는 영구장애이나, 나사못을 제거한다면 그 후 10년간 한시장애로 추정되는 사실, ④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나사못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.

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15. 5. 28.까지는 100%, 그 다음날부터는 가동종료일인 2028. 5. 8.까지는 32%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(한편 장래 나사못 제거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한시장애 기간인 10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므로,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).

(2) 계산 : 116,028,297원

나) 기왕치료비

(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4,261,8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,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(2) 관련 법리
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하여야 하며,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게 된다(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).

(3) 인정사실

갑 제7,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계 4,261,8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순번	연월일	진료비내역	병원	금액(원)
1	2015. 5. 8.	119구급차		200,000
2	2015. 5. 8.	진료 및 처치비	광양사랑병원	142,510
3	2015. 5. 8.~2015. 5. 18.	입원 및 치료비	전남대학교병원	3,189,780
4	2015. 5. 19.~2015. 7. 12.	외래진료비	전남대학교병원	279,780
5	2015. 7. 12.	진료비계산서 발급비	전남대학교병원	10,000
6	2015. 5. 18.~2015. 5. 28.	입원 및 치료비	운암한국병원	219,170
7	2015. 11. 18.~2015. 12. 10.	외래진료비	우일신경외과	40,000
8	2015. 12. 10.	후유장애진단비	우일신경외과	100,000
9	2015. 9. 18.~2015. 9. 23.	진료비 및 수술비	전치과의원	80,600
합계				4,261,840

한편,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 중 5,949,790원을 공단부담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(4) 판단

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전체 치료비 10,211,630원(= 본인부담금 4,261,840원+ 공단부담금 5,949,790원)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거기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.

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체 치료비에서 원고의 과실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4,084,652원[= 10,211,630원 × (1 - 0.6)]임이 계산상 명백한바, 위와 같은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5,949,790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면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손해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) 향후치료비

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1번, 12번 흉추, 제1번, 2번, 3번 요추간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향후 나사못 제거수술을 받을 경우 최소 2,000,000원을 지출하여야 하므로,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향후 나사못 제거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.

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) 기왕개호비

(1) 인정사실

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원고는 2015. 5. 9.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척추판 절제 및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은 사실, ②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. 5. 8.부터 위와 같은 수술 시행 후 7일(2015. 5. 16.)까지 성인 여성 1

인의 하루 8시간 정도 개호가 필요했던 사실, ③ 2015. 5.경 도시일용노임이 87,80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한편 원고는 수술 후 회복기간인 2015. 11. 8.까지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.

(2) 계산 : 790,245원(= 87,805원 × 9일)

2) 물적 재산상 손해

가) 이 사건 트랙터 교환가격

갑 제4,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트랙터는 폐차되었고, 원고는 폐차대금으로 5,500,000원을 회수한 사실,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월 기준으로 이 사건 트랙터의 차종, 연식, 형식, 주행거리, 출력을 고려한 시세는 관리상태에 따라서 상급의 경우 40,000,000원, 중급은 38,0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, 달리 이 사건 트랙터의 관리상태가 상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, 그 교환가격은 중급시세 38,000,000원에서 폐차대금 5,500,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,500,000원(= 38,000,000원 - 5,500,000원)으로 봄이 타당하다.

나) 이 사건 트랙터 시세감정료

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는데 그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격이 통상의 손해가 되는바, 민사소송 전에 그 교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감정에서 산정된 교환가격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었다면, 그 감정비용 또한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.

그런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시세평가감정수수료

로 22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포함
되어야 한다.

다) 이 사건 트레일러 수리비 및 견인비

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트레일러의 수리비 및 견인비로 원고에게 1,819,000
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이를 원고의 재산상 손해
로 인정한다.

라) 이 사건 트랙터 및 트레일러 휴차료

원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산정방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차종
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트랙터의 10일간 휴
차손해로 2,022,300원, 이 사건 트레일러의 2일간 휴차손해로 404,460원을 구하고 있다.

그러나 휴차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
기간 동안의 영업수익을 손해로 인정한 것인데,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 및
경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영업을 하지
못하는 기간 동안의 일일수입을 손해로 인정한 이상 원고에게 별도의 휴차손해를 인정
하기는 어렵다.

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마) 새로 구입한 트랙터 취득세

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트랙터를 폐차하고 새로 트랙터를 구입하는데 지출
한 취득세 상당의 손해도 구하고 있으나, 위와 같은 취득세 지출은 이 사건 사고와 상
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) 계산 : 60,543,016원

(일실손해 116,028,297원 + 기왕개호비 790,245원 + 트랙터 교환가격 32,500,000원 + 트랙터 시세감정료 220,000원 + 트레일러 수리비 및 견인비 1,819,000원) × 40%

나. 위자료

1) 참작한 사유 : 원고의 나이, 가족관계,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,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,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.

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, 그 안전책임자인 이노관,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기사인 강봉근이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,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, 채무 전액이 아니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, 원고가 일부 변제로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, 이 금액은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지 아니한다.

2) 결정금액 : 20,000,000원

다. 소결론

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0,543,016원(= 재산상 손해 60,543,016원 + 위자료 20,000,000원)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64,770,9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. 5. 8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. 12. 1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나머지 15,772,0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. 5. 8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. 8. 1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 비율

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노경필

 판사 김도연

 판사 류봉근